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신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우전부 사이의
신의주-단동간 원거리대칭
케블에 관한 합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신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우전부는 조중 두 나라사이의 전선협조관계를 강화하며 통신연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의주-단동사이에 원거리용대칭케블을 누릴데 대한 실무적문제를 토의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쌍방은 조선 신의주전신전화국에서 압록강을 거쳐 중국 단동전신국까지의 구간에 12-252KHZ 60통화로 원거리용대칭케블 두줄을 누리는 건설공사를 진행하는데 합의하였다.

그 구체적 건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압록강물밑케블의 건설
- 2) 신의주전신전화국과 단동전신국 사이에 지상케블의 건설

- 3) 두 단국에 인입설비의 설치
- 4) 공기주입설비의 설치
- 5) 강 량안에서의 케블망홀 및 케블접 건설
- 6) 물밀케블의 표식판 제작과 설치
- 7) 케블 전 구간에 대한 종합측정과 회선연장

제 2 조

본 공사에 쓰이는 케블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물밀케블은 HEQ₂-252(4×4×1.2+5×0.9)이고
 직매물케블은 HEQ₂-252(4×4×1.2+5×0.9)이며
 관로케블은 HEQ-252(4×4×1.2+5×0.9)이다.
 중국측은 압록강에서 신의주단국까지 소요되는 지상케블과 압록강 물밀구간에 소요되는 물밀케블수량의 절반을 대외무역조로 조선측에 제공한다.

제 3 조

신의주전신전화국과 단동우전국 사이의 지상구간에 대한 케블은 쌍방이 각각 건설한다.

압록강 물밀케블은 조중 쌍방이 공동으로 건설하며 설계는 중국측이 책임진다.

물밀케블의 경로는 철교상류의 800미터 좌우에서 선정하며 구체적인 상류점은 쌍방이 공동으로 확정한다.

시공에 필요한 기구와 배는 중국측에서 준비하며
공사성원이 타는 배는 쌍방이 각각 책임지고 준비
한다.

제 4 조

쌍방은 11월 상순에 신의주 혹은 단동에서 본 공
사의 경로조사설계 및 시공조직을 비롯한 구체적인 문
제에 대하여 토의한다.

12월말에 설계문건을 완성하고 신의주 혹은 단동
에서 설계를 심의하고 합의한다.

설계문건은 중국에서 제공한다.

공사는 1980년 5월에 시작하여 6월에 끝내고 개통
한다.

쌍방은 지상케블공사를 물밑케블건설진도에 맞
게 진행하며 공사를 기일내에 완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

쌍방은 각각 자기측 지상부문의 건설투자를 책임
진다.

물밑케블의 건설비는 쌍방이 공동으로 심의하고

합의한 예산에 의하여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결산방법은 후에 토의 결정한다.

제 6 조

쌍방은 공사과정에서 긴밀한 련계를 가지며 물밀케블공사를 설계의 요구에 따라 진행하고 공사가 완공된 다음 두 단구간의 전기적특성을 설계기준에 도달시켜야 한다.

제 7 조

쌍방은 물밀케블공사에서 제기되는 안전문제, 물밀케블과 지상케블의 련결에서 제기되는 작업분담문제를 신의주 혹은 단동에서 토의한다.

제 8 조

쌍방은 공사의 진도보장과 호상련계의 편리를 위하여 각각 공사책임자를 선정하며 책임자의 직위와 련락방법을 상대측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조

본 합의서는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본 합의서는 1979년 10월 8일 베이징에서 체결되었으며 조선어와 중국어로 각각 두부 작성하였다. 이 두 원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신부 대표단

중화인민공화국
우전부 대표단

김유남

赵步云